

2025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대상기업 모집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벤처나라*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달청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조달청 온라인 상품몰
- 벤처나라 입점(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혜택
: 지정증서, 인증마크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부스 지원 등

2026년 2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2.~12.
- 신청대상: 부산에 사업장(본사)을 두며, 벤처 또는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벤처기업확인서 확인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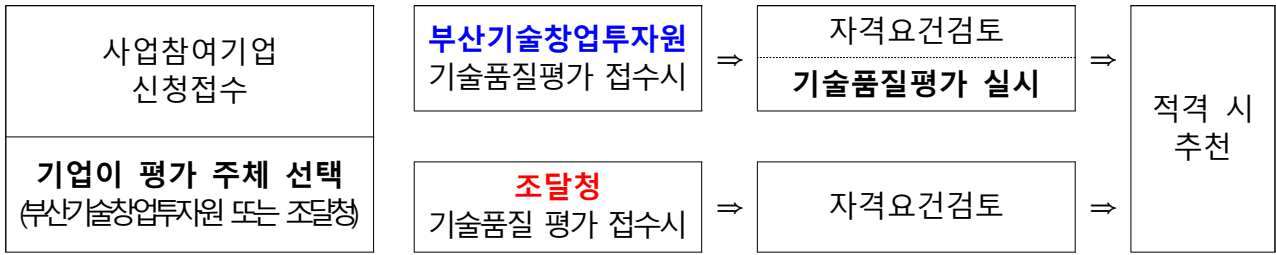
-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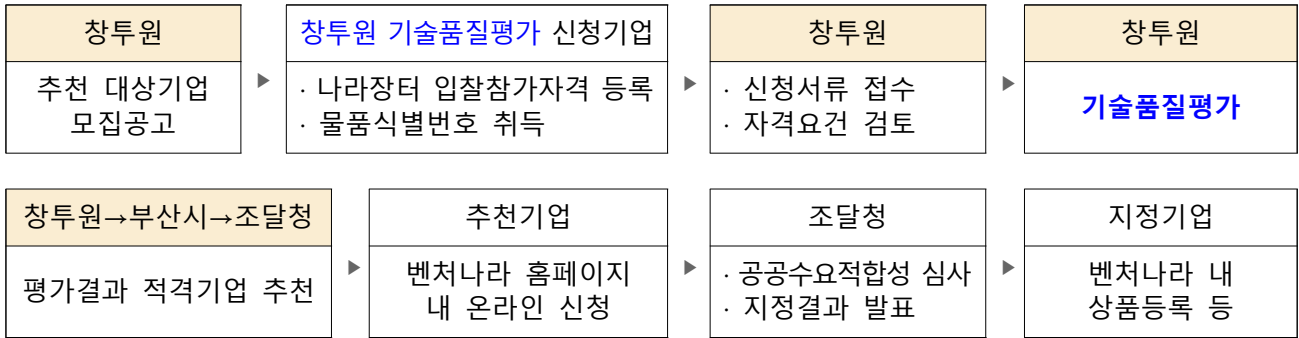
추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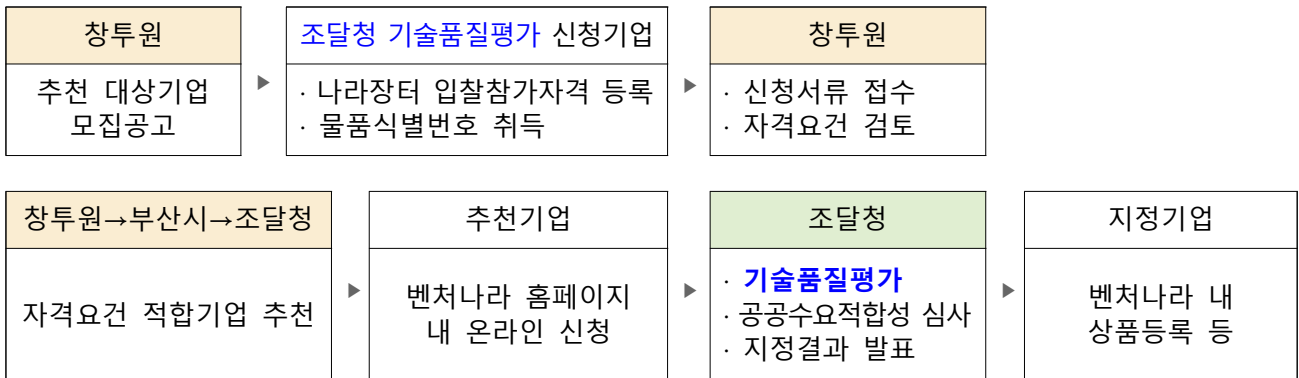
3

평가주체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①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 기술·품질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② 조달청 기술·품질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상시신청(4쪽 사업일정 참조)
- 신청방법: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 내 온라인 신청접수

회원가입/로그인 → 창업지원 → 접수중 → 판로·해외진출 카테고리
→ 해당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첨부 및 신청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 붙임1	필수
2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필수
3	· 상품설명서 ▶ 붙임3	필수
4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필수
5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6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해당 시 제출
7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8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있는 경우 제출
9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필수 (단, 법정 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10	· 기타 증빙 자료	있는 경우 제출
11	·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 양식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부산창업포털 홈페이지 공고 페이지 내 첨부파일 확인	필수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4

사업일정 및 추진절차

○ 사업일정

-	4월	5월	6월	7월	8월
신청접수	공고일~3.20.	3.19.~4.16.	4.17.~5.17.	5.18.~6.17.	6.18.~7.19.
자체 기술품질평가	3.23.~3.26.	4.18.~4.26.	5.19.~5.26.	6.19.~6.26.	7.21.~7.27.
추천(부산시→조달청)	3.27.	4.27.	5.27.	6.26.	7.28.
온라인신청	4.1.~4.9.	5.1.~5.13.	6.1.~6.10.	7.1.~7.9.	8.3.~8.11.
조달청 지정심사	4.15.~4.30.	5.18.~5.29.	6.15.~6.30.	7.15.~7.31.	8.18.~8.31.

-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접수	7.20.~8.18.	8.19.~9.15.	9.16.~10.19.	10.20.~11.18.
자체 기술품질평가	8.20.~8.27.	9.17.~9.23.	10.21.~10.27.	11.20.~11.26.
추천(부산시→조달청)	8.28.	9.28.	10.28.	11.27.
온라인신청	9.1.~9.9.	10.1.~10.13.	11.2.~11.10.	12.1.~12.9.
조달청 지정심사	9.15.~9.30.	10.16.~10.30.	11.16.~11.30.	12.16.~12.31.

5

추천대상기업 선정방법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 자격요건 검토 → 기술·품질평가(서류평가) → 적격기업 추천
- 평가항목
 - (기술평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 (품질평가)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등
 - ※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은 평가 없이 바로추천
- 추천완료기업 대상 이메일 안내 → 온라인 신청 진행(기업)

[조달청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 자격요건 검토 → 적격기업 추천
- 추천완료기업 대상 이메일 안내 → 온라인 신청 진행(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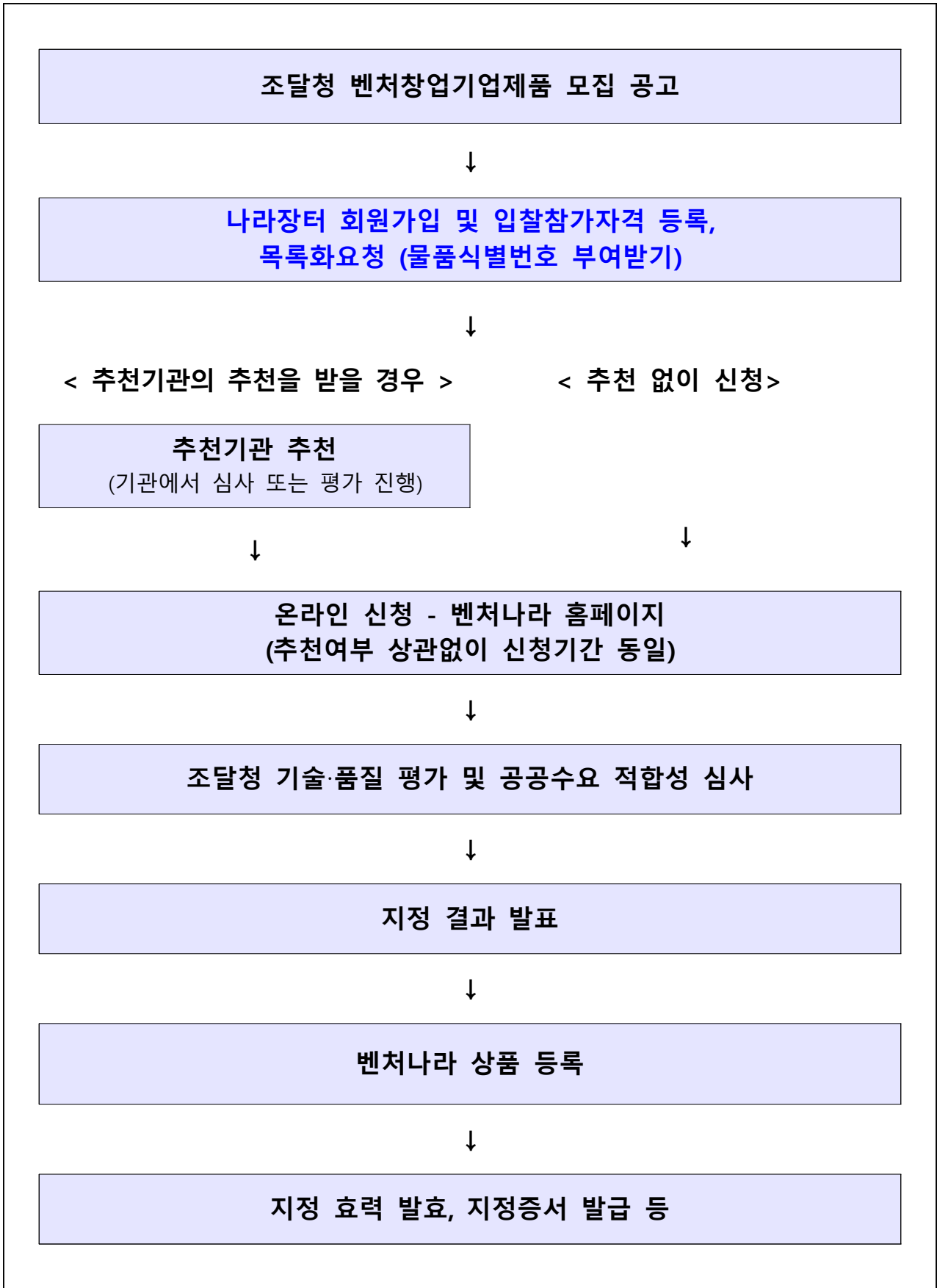
6

문의처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김지연 대리(☎051-715-1743 / ✉kjj@bsia.or.kr)

참고1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참고 > ① 추천 관련 문의처, ② 평가 면제 대상, ③ 지정신청 제출서류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삭제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7.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